종전개정 □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 법인 :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□ 대상 법인 범위 확대 ① 지배주주등\* 이 50% 초과 출자 \* 지분율 1% 이상 +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지분율 ① (좌동) ②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･이자･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% 이상 ②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: 70%→50%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③ (좌동) \* 2022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